선거 시행 세칙

중앙대학교 간호대학

1장 총강

제1조 (선거의 원칙)

1)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로 진행되어야 한다.
2) 선거는 前대 간호대학 학생회의 사업과 활동을 발전적으로 평가, 지향하여 학우들을 학생회의 주인으로 세워내는 과정으로 진행 되어야 한다.
3) 모든 학생회의 회원은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 (선거 시행세칙의 목적)

의혈 중앙대학교 민중 간호대학생회 선거 시행세칙(이하 세칙)은 학생회를 민주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선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1) 본 세칙은 간호대학생회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선거 (이하 간호대학생회 선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세칙에 없는 사항은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참고하거나 간호대학 선거관리 위원회 (이하 선관위)의 의결로 시행한다.

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4조 (선거권)

1) 본 회원으로 한다.
2) 다음 연도 2월 졸업 예정자 중 투표를 하지 않은 자는 유권자에서 제외한다.
3) 선관위는 선거일 5일 전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작성일로부터 회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4) 선거권자는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 (피선거권)

1) 정·부 학생회장 입후보자는 2인 1조
2) 정·부 학생회장 입후보자는 집행국장과 함께 선거에 출마한다. (집행국장은 간호대 학생회칙 9장 제46조를 따르며 2차 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로 한다.)
3) 학생회장 입후보자는 간호대 재학생으로 4차 학기 이상 등록한 자, 부학생회장 입후보자는 2차 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4) 간호대 재학생으로부터 학년별 각 반 별도로 각각 정원의 15%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5) 추천은 후보자별 한 번 가능하며 복수 추천이 가능하다.
6) 입후보자는 학생자치기구의 간부가 아닌 자로서 후보자 모두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19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조 (후보자 등록)

간호대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룰 미팅 30분 전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학 증명서
2) 5조 3항에 의한 추천서와 추천인 명부
3) 대표참관인과 투표참관인이 있는 경우, 명단과 재학 증명서(재적증명서도 가능), 선본원의 재학 증명서
3) 출마 소견서, 공약, 후보 약력 소개서
4) 후보 사진 (포스터용 1장)

제7조 (입후보자 심사)

1) 선관위는 등록마감 후 5조에 의거 입후보자의 자격심사를 해야 한다. 이에 어긋날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2) 입후보자가 6조의 구비서류를 등록마감 시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제8조 (사퇴규정)

1) 선관위와 학교 간부 및 대표자 중 선거 운동을 하려는 자는 추천 시작 사흘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2) 선관위는 입후보를 제외하고 사퇴할 수 없다.
3) 사퇴하려는 자는 사퇴서와 사유서 등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선관위 위원이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선관위가 논의하고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하여 사퇴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 (입후보자 최종 등록 : 룰 미팅)

선관위는 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 최종 등록을 위한 모임을 소집하여야 하며 역할을 다음 각 호의 규정으로 한다. (단, 참여자는 입후보자로하며, 불참 시 선관위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단선일 경우 선관위는 의결을 통해 룰미팅을 선관위와 후보자와의 면담으로 생략할 수 있다.)

1) 등록구비 서류 확인 및 최종 등록 결정
2) 선거 시행 세칙 검토
3) 기타 선거에 필요한 제반의 사항

3장 선거

제10조 (선거일)

1) 간호대선거는 매 학년도 11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선거일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3) 이외의 구체적인 선거일정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4) 2항의 일정은 간호대 학생회에서 후보 등록 마감 1주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제반 행위로 규정한다. (단,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 개진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2) 추천 기간 중 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① 후보자 추천, 설문조사, 후보자 추대 모임 등은 사전 선거 운동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② 추천서는 선관위에서 추천 시작 하루 전에 배포한 추천서를 사용한다.
3) 부정선거운동에 대한 규정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참고한다.

제12조 (선거운동 기간)

1)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선관위가 결정한다.
2)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경고 조치한다.

제13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1) 선관위 위원, 간호대학생회 집행국장, 기타 간부 및 대표자, 재적 중이 아닌 자
2) 1항의 규정을 위배한 경우 해당 후보에게 경고 1회를 준다.

제14조 (총칙)

유세는 개인유세로 선거운동 기간에 정한다.

제15조 (개인유세)

1) 후보자의 개인별 연설회는 강의실로 국한한다.
2) 사제 유인물은 종류를 불문하고 선관위의 사전 허가를 거쳐 선관위의 명의를 넣은 후 후보의 이름을 밝히고 배포한다. (단,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민주적인 선거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때는 선관위의 결정으로 배포금지를 명할 수 있다.)
3) 1, 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에게 경고 1회를 준다.
4) 기타 특이사항은 룰미팅에서 정한다.

4장 선거 관리 위원회

제16조 (위상)

간호대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제반의 업무를 세칙에 의거하여 집행, 조정할 것을 간호대학운영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거에 있어서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제17조 (목적)

간호대선거를 공정하고 민주적, 대중적으로 치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 (업무 및 권한)

1) 간호대선거에서 공정성, 민주성, 대중성을 구현할 제반 사업 및 활동을 기획, 집행한다.
2) 간호대선거를 학우들의 관심 속에서 후보와 그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 효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한 제반활동을 전개한다.
3) 세칙과 선관위가 선거에 관련한 집행을 감시하고 이를 시행치 않을 시 시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등을 포함한 가중 제재

조치를 각 선본에 취할 수 있다. 또한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제반 선거 운동 사례를 적발하여 타당한 징계를 가할 수 있다.
4) 선관위는 선거 후 자동 해체된다.

제19조 (구성)

선관위원장은 당해 간호대 학생회장으로, 부위원장은 부학생회장으로 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은 당해 간호대학운영위원회로 구성한다.

제20조 (소집, 개최 및 의결)

1) 선관위 제반 일상 업무 처리와 후보자의 이의제기 등이 있을 시 선관위원장, 선관위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해야 한다.
2) 선관위원 과반수 출석을 확인한 후 즉시 개회한다.
3) 의결을 요하는 시안에 대한 의결은 선관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무효표 판정은 과반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장 참관인

제21조 (통칙)

1) 투표 참관인은 각 후보를 대신하여 해당 투표소에 배치되어 투표 진행을 참관하는 자를 말한다.
2) 각 후보자는 참관인 1인을 배치할 수 있다.

제22조 (자격)

1) 참관인은 선본원으로 한다.
2) 각 후보자는 등록서류와 함께 참관인 명부와 재학증명서 또는 재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참관인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각 투표 전날 17시까지 교체할 참관인의 명단과 재학 증명서, 또는 재적 증명서를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2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참관인을 배치할 수 없다.

제23조 (이의제기)

1) 참관인은 각 후보를 대신하여 투표 진행 상황을 참관하여 투표 진행사항에 대하여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투표소 내에서 행한 참관인의 결정에 대해 후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투표소에 참관인이 불참할 경우 선관위와 타 후보 참관인에 의해 결정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4조 (규제 내용)

1) 참관인은 투표소에서 선거 운동을 진행 할 수 없다.
2) 참관인은 투표소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선관위와 타 후보 측 참관인이 만장일치로 인정했을 때 선관(부)위원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투표 종료까지 투표소에서 참관 자격을 상실한다. 그리고 대신하여 다른 참관인을 들 수 없다.
3) 참관인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때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① 투표를 방해했을 경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불필요한 언행을 하는 경우)

②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 특정 후보를 지칭하는 물품을 소지하거나 언동을 하는 경우
③ 기타 선관위에서 부정행위로 결정한 경우
4) 참관인이 결정하지 못할 때 대표 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제25조 (기타 사항)

1) 참관인들은 투표기간 중 투표소를 떠날 수 없으며 특정 후보 측의 참관인 부재 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후보 측의 이의를 기각한다.
2) 참관인은 투표당일 오전 8시 30분까지 선관위와 함께 투표함을 운반한다.
3) 투표소 내에서 참관인이 이의 제기할 경우 선관위원장 입회하에 합의가 이루어 질 때까지 선거권자의 투표를 중지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4) 참관인이 결정하지 못할 때 대표 참관인이 입회 할 수 있다.

제26조 (역할)

1) 각 후보의 대표 참관인은 투표 마지막 날 12시까지 개표 참관인 2인을 선정하여 선관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안할 시 개표 참관인의 역할은 무시된다.
2) 개표 참관인은 개표 시작 30분전까지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3) 개표 참관인은 개표 상황을 참관, 득표의 검산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단, 개표 참관인의 교체는 선관위원장의 허락 하에 가능하다.)

6장 이의제기

제27조 (이의 제기)

1)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는 각 후보의 투개표 참관인과 대표 참관인, 후보만이 할 수 있다.
2) 선거 운동원은 후보자를 통하여 이의 제기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선거 운동원이 이를 위반하여 선관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

제28조 (이의 제기의 처리)

1)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선관위 결정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2) 이의제기의 처리는 선관위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의결로 처리한다.

7장 징계

제29조 (정의)

징계라 함은 규칙 각 조항에 어긋나는 행위와 기타 선관위가 징계 사유라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후보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0조 (징계의 종류)

1) 징계는 시정 명령, 주의, 경고로 나누며 주의 2회는 경고 1회에 해당하고, 경고 3회시에는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2) 징계의 종류는 임의적 징계와 필요적 징계로 나누며 그 결정은 32조, 33조에 의한다.

제31조 (징계의 통보)

1) 시정 명령과 주의는 해당 후보에게 구두로 통보하며, 경고는 통보와 함께 이를 공고한다.
2) 시정 명령이나 주의를 받은 후에도 해당 후보가 이를 2시간 이내에 시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후보에게 주의 1회 또는 경고 1회를 준다.
3) 경고를 받은 선본은 경고 공고 게시를 12시간 이내에 경고 사과문과 함께 대자보판에 게시한다. (선거 선전물량에 포함)
4) 경고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가 가해진다.
① 경고 1회 - 경고 내용을 대자보 판에 공개 (공개 사과문과 함께)
② 경고 2회 - 경고일 하루(24시간)의 개별 강의실 유세 금지
③ 경고 3회 - 해당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

제32조 (임의적 징계)

1) 임의적 징계라 함은, 규칙 각 조항에 “징계를 할 수 있다” 또는 “경고 1회를 줄 수 있다” 등으로 규정된 경우와 기타 선관위가 징계 사항으로 결정한 것으로 징계의 결정이 선관위 재량으로 되어 있는 징계를 말한다.
2) 임의적 징계의 결정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 (필요적 징계)

1) 필요적 징계라 함은, 규칙 각 조항에 “징계를 한다.” 또는 “경고 1회를 준다.” 등으로 규정된 것으로 징계의 결정은 선관위 재량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항의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필요적 징계를 선관위원장 (혹은 부위원장)이 각 규칙 각 조항에 따라 시행한다. 단, “징계를 한다.” 또는 “주의 1회 또는 경고 1회를 준다.”라고 규정된 경우 선관위의 과반 수 이상 의결에 따라 중앙 선관위원장 (혹은 부위원장)이 주의 또는 경고를 준다.

제34조 (재심의)

경고의 징계나 주의 2회로 인하여 경고 1회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 한하여 선관위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8장 투표

제35조 (투표일과 투표시간)

1) 투표는 2일에 걸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투표시간은 첫째 날 10시부터 19시까지, 둘째 날 10시부터 19시까지이다.

제36조 (투표용지, 투표구 및 투표소)

1) 투표용지는 선관위가 제작한다.
2) 투표용지는 선관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3) 투표소에는 선관위 홍보물 이외의 유인물 부착을 불허한다.

제37조 (투표자의 자격)

선거권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된 신분을 확인 하여야 투표할 수 있다.
① 학생증
② 국가인정 자격증
③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로서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교학과나 과사무실에 서 학번대조가 가능한 자, 참관인과 선관위원이 만장일치로 공인하는 자)

제38조 (투표절차)

1) 선거권자와 투표권자는 다음의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① 선관위의 신분확인
② 선거인 명부 확인
③ 투표용지 배부
④ 투표
2) 전자투표로 시행되는 경우는 다음의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① 선관위의 선거인 신분 확인(얼굴과 이름, 학번)
② 선거인 명부 확인
③ 인증번호 배부
④ 전자투표 실시

제39조 (투표소에서의 질서)

1) 투표소에서는 선관위원, 참관인, 투표자, 후보자 이외에 있을 수 없다.
2) 투표소에서는 투표행위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3) 선거운동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징계한다.

제40조 (투표함 이송)

1) 투표함은 투표 당일 오전 8시 30분에 선관위원과 각 대표 참관인의 참관 아래 봉함에 자물쇠를 채우고 투표구로 이송한다.

제41조 (투표마감 후 이송)

1) 투표가 끝난 후 선관위원장(혹은 부위원장)이 투표함을 봉하고 참관인이 확인한 후 선관위원과 함께 선관위실로 이송한다.
2) 투표함 이송 시 함께 구비해야할 서류물품은 다음과 같다.
① 기재한 선거인 명부
② 남은 투표용지
③ 제반 기표 용품

제42조 (투표함 선관위 도착 후)

1) 선관위원장(혹은 부위원장)은 투표함, 제41조 2항의 서류, 물품 등을 인수한 즉시 이외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각 투표소와 선관위원은 투표함의 이송전후에 이상에 대한 참관인의 확인을 받는다.

제43조 (투표함의 보관)

1) 투표함은 선관위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선관위실에 투표함 보관에 부적당할 시 각 후보의 의견을 들어 학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9장 개표

제44조 (개표시간)

개표시간은 선관위가 결정, 공고한다.

제45조 (통칙)

1) 개표는 선관위 위원만이 할 수 있다.
2) 표의 유, 무효표 및 특정후보의 득표기준은 선관위가 정한다.

제46조(개표장)

1) 학교 내의 공개된 장소로 선관위가 결정, 공고한다.
2) 개표장에서의 질서 유지는 선관위원장(혹은 부위원장)의 책임아래 수행한다.
3) 후보자는 개표시간 30분 전에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개표 종료할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

제47조 (개표소)

1) 개표소는 방청객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설치해야만 한다.
2) 개표는 선관위 위원과 개표 참관인만이 있을 수 있다.
3) 개표소에서의 연락은 선관위원장(혹은 부위원장)만이 할 수 있다.

제48조 (개표절차)

1) 개표는 다음의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① 투표인 수 공고
② 투표함 개봉
③ 개표
④ 개표참관인의 재확인 및 득표의 검산
⑤ 후보의 득표 묶음별로 분류 후 투표함에 재투입
⑥ 현황판에 기재
2) 전자투표의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① 투표인 수 공고
② 개표에 필요한 암호 입력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암호는 중앙선관위장, 전자투표시행 업체가 가지고 있는다.)
③ 개표

④ 개표 결과 공개 및 공고

제49조 (무효투표)

아래와 같은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한다.
①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②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경우
③ 둘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④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⑤ 선관위에서 제공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⑥ 이상의 것 이외의 경우에는 개표위원의 논의 후 선관위가 결정한다.

제50조 (효력)

1) 투표함에서 5%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때에는 투표자체가 무효이다.
2) 전체 투표율이 50%가 안 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단, 선관위와 선본의 합의하에 1일에 한하여 연장 투표를 할 수 있고, 연장 투표 시에도 전체투표율이 50%가 안 될 경우 중앙선관위의 논의 결정으로 재선거 여부를 결정한다.
3) 1, 2위 간의 득표차가 무효표수와 기권표수의 합 이하일 경우 재투표를 한다.

10장 재투표 및 재선거

제51조 (재선거)

제50조 2, 3항에 해당할 경우 선거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입후보절차부터 다시 시작한다.

제52조 (결선투표)

제50조 4항에 해당하는 경우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의 결선투표를 55조에 의해 실시한다. 이 경우 무효표와 관계없이 다 득표자가 당선된다.

제53조 (재투표, 결선투표절차)

1) 일주일 이내에 실시한다.
2) 선거운동은 하지 않는다.

11장 당선

제54조 (당선의 기준)

1)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전자투표의 경우 기계적 오류로 인하여 생긴 무효표는 기권표에 합산한다.)
2)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의 득표차이는 전체 투표수의 무효표수와 기권표수의 합을 초과 하여야 한다.
3) 단독 후보일 경우, 투표자의 50%이상 찬성으로 한다. (단, 찬성표와 반대표의 차이가 무효표수와 기권표수의 합보다 커야 한다.)

제55조 (당선공고)

1) 개표결과가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선관위원장(혹은 부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당선공고에 관련한 이의 신청을 받고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동의를 얻어 당선공고를 한다.
2) 당선공고 이후 24시간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24시간이 넘을 경우 이의 신청을 받지 않는다.
3)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선관위는 즉시 소집하여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단, 이의 의결은 선관위 재적위원 1/2이상으로 한다.)
4) 24시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당선확정공고를 한다.

부칙

제1조 (선거지침의 제정)

이의신청에 의해 선관위가 심의 결정하며, 본 세칙에 필요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선거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단, 그 범위는 본 세칙을 효력을 벗어날 수 없다.)

제2조 (선거시행 세칙의 효력발생)

본 시행세칙은 간호대학생회 간호대운영위원회와 간호대학생대표자회의의 동의를 거쳐 34대 간호대학생회 선거에서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제3조 (개정)

1) 본 개정세칙은 2020년 09월 22일 개정하여 2020년 0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특수상황)

1) 특수 상황이라 함은 감염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회원의 집합 또는 대면 형태로의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2) 특수 상황에는 간운위의 의결을 통해 회칙에 제약받지 않고 결정을 할 수 있다.
3) 전항의 경우, 회원에게 온라인을 통해 해당 조항과 의결과정을 포함한 회의록을 기재하여 1일 이내에 결정 사항을 공지해야 한다.
4) 결정사항과 관련된 공지에 대해 60인 이상의 이의 제기 또는 해명 요구가 있을 시, 7일 이내에 해명문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공지하여야 한다.